취득 성적 포기 안내

1. 근거

가. 학칙 제43조(취득성적의 포기)

나. 학사운영규정 제103조(취득성적의 포기)

2. 내용

이미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이 ***C+*등급 이하의 경우 성적을 포기**할 수 있는 제도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초과 취득했거나 초과 취득 예정인 경우

3. 신청대상자 : ***2024*년 후기(*8*월) 졸업예정자**

4. 신청 시기

이수학기	시기	비고
7학기	학기 초	졸업까지 ***총 12*학점 이내에서 가능**
8학기	학기 초	
	졸업 마지막 학기 성적 확인 후	

5. 신청방법(☏ *043- 830- 8584, M*ㅣ *411*호)

구분	절차	일정	제출서류
1. 작성	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취득성적 포기원 작성, 출력 및 서명([붙임] 참조)	2024. 07. 15. ~ 07. 16.	취득성적 포기원
2. 제출	지도교수 학생상담 및 지도 후 서명		
3. 검토	학과장 확인 후 서명		
4. 확인	학생 → 학생원스톱센터		

6. 주의사항: 취득 성적을 포기한 교과목의 성적은 재인정받을 수 없음